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김민지†

피세영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최근 경찰이 외국인에게 피의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미란다 경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지만 한글과 영문 고지문의 내용 및 사용 단어 간의 차이, 어려운 법률 용어의 사용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과 미성년자(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의자 권리 이해도 평가 척도와 미란다 퀴즈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들에 비해 미성년자의 피의자 권리 고지에 사용된 단어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의자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나 문장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성년 피의자 용 권리 고지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피의자 권리 고지, 미란다 경고, 이해도, 미성년 피의자, 미란다 퀴즈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1-1203-0041)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02-2077-7684, E-mail: mkim76@sm.ac.kr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로 시작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절차를 포함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절차가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내용이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 1966) 판결에 의해 수사절차의 원칙과 기준이 확립되었고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판결은 세계 각국의 헌법 및 형사 소송법에 큰 영향을 끼쳤고 흔히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권리’로 불리고 있다(Cassell, 1996; Rogers, 2008에서 재인용; 김재원, 2007).

미국에서 피의자에게 고지해주어야 할 내용은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Rogers, 2008; Wrightsman & Pitman, 2010; 김민지, 2012; 안성수, 2008). 우선 고지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으로는 첫째, 침묵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자기부죄거부 특권(privilege against self incrimination)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한 사실 자체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말한다. 둘째, 피고인이 침묵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해주어야 한다. 셋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넷째,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및 무료 법률 서비스는 경찰의 신문을 받기 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에는 즉시 신문을 멈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아야 한다. 즉, 권리를 포기한 후에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권리의 지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내용이 고지가

된 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지된 내용 중 특정한 내용 또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을 이해했다는 답변을 받게 되면 각각의 권리들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피의자 권리 고지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첫째로 피의자가 구금 또는 신체 및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될 경우와 수사기관에 의해 신문을 받기 전에 고지해야만 한다. 둘째, 피의자는 피의자 권리 고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지문은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clear and unequivocal language)”로 고지되어야 하며 피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역치 조건(the threshold requirement for an intelligent decision)”이다. 셋째, 피의자는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권리 포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voluntarily), 의도적(knowingly), 지적(intelligently)”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본인의 선택을 인지하고 있고 만약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포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강압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의 각 관할 구역마다 적절한 피의자 권리 고지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고지하는 방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피의자의 권리 고지는 법적으로도 의무일 뿐만 아니라 고지하는 내용들은 몇 개의 문장만으로 이루어져 고지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인 피의자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여 권리를 사용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간과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지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고지의 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묻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권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의 피의자 권리 고지

미국의 미란다 판결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198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 되었다. 한국의 피의자 권리 고지를 보장하는 조항은 헌법 제12조 2항¹⁾의 진술거부권, 4항²⁾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항³⁾에는 체포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72조⁴⁾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200조의 5⁵⁾, 제 244조의 3⁶⁾은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신문 전에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피의자 권리 고지의 내용은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미란다 권리 고지의 내용과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제외하고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피의자 권리 고지문이 관할 구역마다 다양한 버전으로 사용되지만 한국은 동일한 내용으로 고지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피의자 권리 고지가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신문에 앞서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의 진술(자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신의기, 강은영, 2002). 즉, 피의자 권리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따라서 그 증거 능력이 소실되며 피고인에게 얻은 진술과 자백의 증거 능력 유지를 위해서 피의자 권

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헌법 제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2) 헌법 제 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3) 헌법 제 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4) 형사소송법 제 72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형사소송법 제 200조 5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

- 6) 제 244조의 3: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리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차준호, 2006).

한국의 피의자 권리 고지문은 일반적으로 ‘귀하는 201X년 X월 X일, XX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명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으로 구성된다. 각 문장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XX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피의자가 XX죄를 저질렀을 수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술거부권’은 혐의를 받고 있는 죄나 관련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언제든지 피의자가 변호인을 요청하면 변호인을 즉시 만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변명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설명해도 좋다는 의미이다.

최근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 용의자들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스마트폰 용 애플리케이션인 “미란다 원칙”을 개발하였다(신윤철, 2011). 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체포의 유형과 33가지의 범죄의 유형별로 경고문을 선택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니어, 태국어의 8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이미 녹음된 음성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절도 현행범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 한글 권리 고지문의 경우는 “귀하는 절도죄를 범한 현행범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212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하겠습니다.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명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로 제시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피의자 권리 고지문은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김민지, 2012). 첫째,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한국어 고지문과 이를 번역한 영문 고지

문에 차이가 있다.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라는 내용이 “You have the right to appoint a lawyer and have him(her) present with you while you are being questioned”(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신문 시 그(그녀)가 당신과 함께 참석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어 영문 경고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영문과 스페인어 권리 고지문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Rogers, Correa, Hazelwood, Shuman, Hoersting, & Blackwood, 2009)처럼 이러한 차이가 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연구가 없으며 한국어 고지문과 외국어 고지문이 얼마나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미란다 경고문에 사용된 단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는 “진술거부권”과 같이 법적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이 애매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변명”이라는 단어 또한 “평계, 구실”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변명의 방법이나 내용, 변명을 하게 되면 진술이 되어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지된 내용을 범죄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권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용과 소년용(미성년자) 권리 고지문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라면 미성년자의 경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피의자 권리(미란다 경고)의 이해도

연구를 통해 미국의 다양한 미란다 권리 고

지문을 분석한 결과 총 945개의 관찰 구역에서 피의자 권리 고지문은 약 886개가 존재하고 49개에서 54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지문의 이해도 수준은 초등학교 2.8학년 수준에서 대학 이상의 수준으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Rogers, Harrison, Shuman, Sewell, & Hazelwood, 2007; Rogers, Hazelwood, Sewell, Harrison, Shuman, 2008). 또한 미성년 피의자용 미란다 권리 고지문의 경우에도 고지문의 길이와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gers et al., 2008). 일반인에 비해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과 지능이 낮을 가능성이 크고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에는 성인 피의자에 비해 이해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미란다 권리에 대한 이해 여부는 제대로 고지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고지를 받는 피의자의 교육 수준, 지능 및 인지 능력,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여부, 고지 받은 시점의 건강 상태와 어느 관찰 구역에서 고지 받았는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특정 피의자가 피의자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았는지, 고지 받았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가 자발적이고 의도적이며 현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포기한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포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법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Grisso(1981, 1998, Rogers, 2008와 Ryba, Brodsky, & Shlosberg, 2007에서 재인용; 김민지, 2012; 차준호, 2006)는 고지문에 사용된 단어와 구절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여부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두 가지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미란다 권리 이해도 도구”(Miranda Rights Comprehension Instruments)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네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란다 권리의 이해도(Comprehension of Miranda Rights, CMR), 미란다 권리의 이해도-재인(CMR-Recognition), 미란다 어

휘 이해도(Comprehension of Miranda Vocabulary, CMV), 그리고 신문 시 권리의 기능(Function of Rights in Interrogation, FRI)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제 2판이 출시되면서 구금 및 신문 절차에서의 강압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Coercion in Holding and Interrogation Procedure)이 추가되었다. 미란다 권리 이해도 검사는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는데 언어적인 표현력을 요구한다는 한계가 있었고 미란다 권리의 이해도-재인 검사로 보완되었다. 이 검사는 미란다 권리 고지문을 4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하나씩 읽어준 후에 각 문장에 대하여 3개의 문장을 읽어주고 그것이 본래의 미란다 권리 고지문의 문장과 동일한 지, 다른 지 여부를 답하면 된다. 또한 다른 두 검사의 보완책으로 미란다 권리 어휘 이해도 검사가 개발되었는데 고지문에 포함된 특정 단어들을 제시하고 각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형식이다. 피의자 권리를 고지 받았던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미란다 권리 이해도 검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지능, 인지 능력 등을 함께 측정한다.

취약집단의 피의자 권리 이해도

취약한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나이,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성격, 성숙도 등과 같은 발달적,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권리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한 연구에 의하면 피의자로서의 권리는 수사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며 언제든 수사관이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ld, 2006). 또한 나이가 어리고 지능이 낮을수록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cLachlan, Roesch, & Douglas, 2001).

그리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는 읽기 수준이 6학년 미만인 권리 고지문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이들은 인지 능력뿐만 아니

라 적응문제도 있으며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고지 받는 경우에는 이해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gers, Harrison, Hazelwood, & Sewell, 2007).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에 대한 이해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Rost와 McGregor(2012)는 언어 학습 장애(language learning disability)와 발달적 언어 장애(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와 같은 특수언어 장애(SLI: Specific Language Impairment)가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권리 이해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권리 고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종합적인 이해능력과 개인의 기본적인 능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정신이상, 인지능력 저하, 특정한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나이가 어린 경우 권리에 대한 이해도는 정상적인 성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Rogers와 그의 동료들(2008)은 1)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는 성인용 고지문, 2) 최소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는 미성년자용 고지문, 3) 125단어를 초과하는 고지문, 4) 법적인 용어를 포함하는 고지문, 5) 내용에 결함이 있는 고지문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권리 고지문의 이해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1) 읽기 수준이 6학년 이하일 것, 2) 문장 복잡도⁷⁾는 40점 이하일 것, 3) 법률용어나 혼동하기 쉬운 동음이의어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교육수준이 필요한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 4)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도

7) 그램머틱 문장 복잡도(Grammatik Sentence Complexity)는 절과 전치사구의 빈도를 고려한 복합 문장의 비율을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1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다(자세한 내용은 Rogers et al.(2008) 논문 참고).

사용하지 말 것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받는 법임상(clinical forensic) 전문가가 일반적인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이해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및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해도에 대한 연구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쉽게 측정하기 위해 Rogers, Rogstad, Gillard, Drogin, Blackwood, 그리고 Shuman(2010)은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피고인들과 같이 다양한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권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범주화하여 ‘미란다 권리 척도(MRS; Miranda Rights Scale)’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미란다 퀴즈(Miranda Quiz)를 개발하였다. 미란다 퀴즈를 사용하여 피고인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피의자들보다 교육 수준이 더 높은 대학생 집단의 경우도 특정단어, 즉 빈곤한(indigent)과 기소되다(indicted)를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이유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어용 권리 고지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Rogers et al., 2009). 그 결과 성인용 권리 고지문은 영문에 비해 5개의 단어가 짧았지만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11개의 단어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묵할 권리와 같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와 어색한 문구나 오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약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적인 성인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피의자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언어적 능력, 심리적 문제,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취약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

를 만들거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단어나 문장을 사용한 적절한 권리 고지문을 별도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피의자 권리 고지의 문제점

신의기와 강은영(2002)은 범죄 수사 시 발생했던 피의자 인권침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고지된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6.0%뿐이었으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였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고지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9%였지만 수사관이 너무 간단히 말하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은 62.5%, 너무 빨리 말하거나 읽어서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응답한 경우는 19.0%, 내용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2.1%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경우 피의자 권리 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준호(2006)는 피의자 권리 고지에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피의자 권리를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소년범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피의자 권리 이해도 점수가 낮았으며,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제시되는 단어 가운데 ‘혐의’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통계청, 2012)에 따르면, 2010년 소년범죄자는 총 89,77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강력범은 3.5%를 차지하였다. 2006년 강력범 비율이 2.7%, 2007년에 2.2%, 2008년에 2.2%, 2009년에 2.8%를 보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년범죄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소년범들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

서는 청소년용 피의자 권리 고지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청소년용 피의자 고지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등의 취약 집단을 위한 고지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헌법 제 11조 1항⁸⁾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적 권리가 피의자 권리 고지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180조⁹⁾에서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 대하여 통역인을 두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하여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신의기, 강은영, 2002). 또한 장애를 가진 피의자 또는 용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 고지에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신현중, 탁종연, 김택수, 이영미, 김동범, 2007). 장애가 있는 피의자 19명 중 14명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피의자 권리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도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김민지(2012)는 한국의 피의자 권리 고지 절차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한국의 피의자 권리 고지문은 본래의 미란다 경고의 개념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고지문에 사용된 단어 중에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상적인 단어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셋째, 한국의 피의자 권리 고지는 성인용과 소년범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피의자 권리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권리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처럼 피의자 권리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는 첫째, 강압적인 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 허위 자백이나 허

8)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9) 형사소송법 제 180조: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위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셋째, 권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 라도 그 증거 능력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Kassin, Drizin, Grisso, Gudjonsson, Leo, & Redlich, 2010; 차준호, 2006).

본 연구의 목적

미국에서는 사법 관할 구역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미란다 경고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생, 용의자, 피고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취약 집단 중에서도 청소년(미성년) 피의자의 권리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외국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피의자를 위한 청소년용 권리 고지문이 제공되고 있지만 청소년용 권리 고지문 자체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Grisso, 1980, Viljoen, Zapf, Roesch, 2007). 미국의 법 심리 관련 연구자들은 연구들을 통해 피의자 권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들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피의자 권리 고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권리 고지문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지, 제공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 용 피의자 고지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용의자가 검거되거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불안할 수밖에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를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 그리고 고지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 두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취약 집단인 청소년의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용 권리 고지문의 문제점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 용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모델 및 고지 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사용한 단어나 표현, 그리고 고지문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한국형 권리 고지문에 사용한 단어나 표현에 대한 이해는 성인과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다.

방 법

대상

청소년의 경우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상이었고 다양한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하였다. 총 184명이었고 남학생 75.3%, 여학생 24.7%였으며, 평균 연령은 16.82세(SD=1.32)였다. 성인의 경우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185명이 대상이었고 남학생 35.9%, 여학생 64.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30세(SD=1.91)이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중고등학생 184명, 대학생 185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피의자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피의자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와 법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가장 많이 얻는 출처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과 대학생 모두 피의자 권리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28.9%로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M=1.97, SD=1.061)보다 대

학생(M=2.55, SD=1.110)들 스스로가 피의자 권리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t(358)=5.041, p<.001$). 청소년과 대학생이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출처는 텔레비전(33.2%)이었으며, 그 다음은 드라마(21.7%), 영화(10.4%), 책(9.5%), 신문(9.5%)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의 대부분이 미디어를 통하여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설문 내용 및 측정 도구

설문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피의자 권리 고지에 사용된 단어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Grisso(1981, 1998)가 개발한 미란다 경고 이해도 도구 중 차준호(2006)가 번역한 한국형 피의자 권리 어휘 이해도 검사(K-CMV)를 사용하였고 피의자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개의 단어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사용된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차준호(2006)가 번역하고 수정한 한국판 피의자 권리 재인 검사(K-CMR-R)를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문장에 대해 3개의 예문이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피의자 권리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Rogers, Rogstad, Gillard, Drogin, Blackwood와 Shuman(2010)이 개발한 미란다 퀴즈(Miranda Quiz) 25문항을 번안하여 제시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리커트(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미란다 퀴즈는 묵비권, 즉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ilence), 진술의 위험성(risks of talking),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counsel), 무료 법률 서비스(free legal services), 권리 지속성(continuing legal rights), 미란다 권리에 대한 오해(misperceptions about Miranda), 조사 전 경찰의 관행(police practices during pre-interrogation) 등 총 7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피의자 권

리 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경찰서에 연행된 유죄 또는 무죄인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할 것인지 물어보았을 때 용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 또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비율을 퍼센트(두 비율의 합은 100%)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유죄 또는 무죄인 경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변호인 없이 진술하겠는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절차

모든 조사 대상자들은 설문에 대한 안내 사항과 비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자발적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 특정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를 공시하였고 참여 시 이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청소년들의 경우 해당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먼저 접촉하여 설문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도움을 주겠다고 답변한 교사들을 통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은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교사들로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두로 전달 받았으며 불이익 없이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며,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을 전달하였다. 그 후 문서로 동의서가 제시되었고 동의 한 경우에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가 끝난 후 모든 조사 대상자들에게 사후 설명(debriefing)이 제공되었다. 청소년의 경우 총 300부 중에서 불성실 응답,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하고 184부가 분석에 포함되었고 대학생들의 경우 총 220부 중에서 불성실 응답 및 무응답 설문을 제외하고 185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결 과

피의자 권리와 사용된 단어의 이해도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사용된 각각의 문장에 대해 세 개의 예문을 제시하고 예문이 문장과 동일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를 K-CMR-R을 통해 평가하였고 오답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대학생보다 청소년의 오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귀하는 201X년 X월 X일, XX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에 대해 ‘당신이 XX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χ²(1,N=367)=25.807, p<.001), ‘당신이 XX죄를 저질렀다’(χ²(1,N=367)=26.835, p<.001), ‘당신이 XX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χ²(1,N=367)=9.437, p=.002)라는 예문에 대해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오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와 함께 제시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χ²(1,N=367)=16.174, p<.001), ‘당신에게 수사관이 질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된다’(χ²(1,N=367)=41.646, p<.001),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된다’(χ²(1,N=367)=14.365, p<.001)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오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에 대해 ‘당신은 조사 받기 전에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χ²(1,N=365)=5.075, p=.024), ‘수사관과의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이 당신을 만나러 올 것이다’(χ²(1,N=365)=52.510, p<.001)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오답 비율이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오답비율은 50%에 달하였다. 청소년들 중 일부는 변호인과 사회복지사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을 조사 후 변호

표 1.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K-CMR-R)

	정답	오답 인원수(%)		χ ²
		대학생	청소년	
귀하는 201X년 X월 X일, XX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XX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	O	5(2.7)	35(19.2)	25.807***
당신이 XX죄를 저질렀다.	X	15(8.1)	53(29.1)	26.835***
당신이 XX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O	35(18.9)	60(33.0)	9.437**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X	16(8.6)	44(24.2)	16.174***
당신에게 수사관이 질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된다.	X	4(2.2)	46(25.3)	41.646***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된다.	O	10(5.4)	33(18.1)	14.365***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조사 받기 전에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X	43(23.2)	61(33.9)	5.075***
수사관과의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이 당신을 만나러 올 것이다.	X	27(14.6)	90(50.0)	52.510***
변호인을 요청하면 즉시 변호인과 만날 수 있다.	O	24(13.0)	35(19.4)	2.819
변명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X	73(39.5)	77(42.3)	.308
자신이 행동하게 된 이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말할 필요 없다.	X	17(9.2)	35(19.2)	7.494*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도 좋다.	O	6(3.2)	42(13.2)	12.085**

*p<.05, **p<.01, ***p<.001

표 2.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사용된 단어의 이해(K-CMV)

협의	
의심, 범죄가능성 (80.1%)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범죄의 소지가 있음, 범인으로 의심·추정됨, 죄를 저지른 확률이 꽤 높음,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 있음, 피의자 가능
범죄행동 (10.6%)	범죄를 행한 것, 죄를 지은 사실, 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임, 잘못된 것, 범죄행동, 행동을 실행한 것
조사 (5.3%)	의심을 받아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에 대한 조사, 범죄를 일으켜 조사를 받음, 수사 받고 있음
기타 (4.1%)	신고, 범죄자라는 누명, 벌, 오해
진술	
상황설명 (52.6%)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말로 설명하는 것,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 범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 이야기하는 것, 범죄에 대한 모든 서술적인 말, 사건 설명,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 자초지종의 설명
진실, 사실고백 (22.0%)	진실을 말할, 고백, 진실 된 이야기, 진실한 답변, 사실대로 말하는 것, 진실 된 변론, 솔직히 말하는 것, 올바른 대로 말하는 것
조사에 대한 답변 (13.6%)	조사에 대한 응답, 조사받을 때 말하는 것,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묻는 말에 자신이 아는 대로 대답하는 것, 범행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것, 검찰의 추궁에 대답하는 것
변호의 말 (4.0%)	자신의 입장표명, 나를 보호해 줄 말, 자신을 변호하는 말
기타 (7.8%)	잘못을 말하는 것, 자신의 잘못된 과정을 쓰는 것
변호인	
변호 (38.4%)	변호사, 변호해주는 사람, 변호할 수 있는 사람
대변 (24.3%)	대신 말해주는 사람, 내 말을 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말을 잘 대변해 주는 사람, 내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
도움 (21.5%)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우미,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
보호 (7.6%)	보호해 주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줄 보호적 권리가 있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
옹호 (3.7%)	자신의 편에서 이야기 해주는 사람, 내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해 줄 사람, 피의자를 옹호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
단순법적지식인 등 (1.7%)	법률 보조, 법률 보조인,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타 (2.8%)	자신이 잘못된 이유를 이해시키는 사람, 입증하는 사람
선임	
고용, 채용 (37.9%)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 변호사 채용
요청, 구함 (21.2%)	데려오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 도움을 요청, 전문가를 섭외
선택, 지정 (13.9%)	채택, 지정, 선택, 뽑는 것, 변호사를 고르는 것
임명 (12.1%)	위임, 임명, 자신을 변호할 임무를 맡김, 일을 맡김
기타 (14.8%)	초청, 이용, 사용, 소환
변명	
설명, 해명 (38.4%)	잘못에 대해 이유를 말하는 것, 행동을 이해시키는 것,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사건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
변호 (27.9%)	자신을 변호하는 말, 자신을 보호할 말을 해보는 것,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정하는 것, 알리바이 주장, 무죄임을 주장
평계 (11.7%)	어떤 잘못에 대해 구실을 대는 것, 자신의 행동과 상황에 대해 부정, 핑계 대는 것, 사건에 대해 둘러 대는 것
반박, 반론 (9.3%)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한 반박, 반론 및 이의 제기, 타인의 의견을 반대하며 얘기하는 것
거짓말 (6.6%)	사실이 아닌 말, 내가 겪은 일과 다른 사실들을 말하는 것
기타 (6.0%)	숨기기 위한 수단

인이 만나러 올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호인을 요청하면 즉시 변호인과 만날 수 있다’의 경우에는 오답비율에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변명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의 경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던 경우가 두 집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응답자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자신이 행동하게 된 이유 이에 다른 어떤 것도 말할 필요 없다’($\chi^2(2, N=367)=7.494, p=.014$),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도 좋다’($\chi^2(1, N=367)=12.085, p=.001$)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오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권리 고지에 사용된 단어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장에 사용된 특정

표 3. 관련 단어들에 대한 이해

영장	
체포 문서 (60.6%)	체포를 허락하는 종이 문서, 체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승인한 문서, 행동을 허락하는 명령장,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종이, 구속해도 된다는 허가증, 체포허가서, 체포를 해도 된다는 법원의 증명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도구
권리와 근거 (21.2%)	체포할 수 있는 권리부여, 행위를 허락하는 법적 근거, 체포 허락하는 것, 체포해도 된다는 공적인 허락,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체포하는 당위성,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 근거,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허가, 집행할 수 있는 권리
기타 (18.3%)	죄에 대해 적은 진술문, 검찰에서 인정한 체포 증거, 소환장, 체포 동의서,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 절차, 강제수사, 경찰서로 오라는 것
거부권	
거부, 거절 (58.9%)	거부하는 권리, 하지 않을 권리, 거절할 권리, 응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 요구된 명령이나 지시나 권유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진술거부, 묵비권 (37.1%)	말하지 않을 권리,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 발언하지 않을 권리, 물음에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묵비권, 자신 마음대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됨
기타 (4.0%)	저지할 수 있는 권한, 원하지 않는 권리,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주는 인권, 자기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 권리, 인정하지 않는 것
신문	
조사 (38.8%)	사건과 혐의에 대하여 조사,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묻는 일, 피의자를 상대로 정보를 캐내는 것, 피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심층면담, 취조, 심문
질문 (36.8%)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묻는 것, 혐의사실을 물어보는 것, 의심이 가는 점이나 확인을 해야 할 점을 묻는 것
자백유도 (9.4%)	자백을 얻기 위한 과정, 자백을 유도하는 대화,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
추궁 (8.5%)	죄를 추궁하는 것, 죄를 묻고 따짐, 죄를 지었는지 밝히는 것
기타 (6.5%)	수사를 위한 탐문, 동요시키는 것

단어에 대한 의미를 본인만의 언어로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대체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혐의’라는 단어의 경우 약 20%가 조사를 받는다고거나 누명, 오해와 동일한 의미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진술’의 경우 7.8%는 자신의 잘못을 말하거나 잘못된 과정을 쓰는 것과 같이 자백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변호인’의 경우에는 약 4.5%가 법률 보조인, 자신이 잘못된 이유를 이해시키는 사람 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명’은 약 52%가 핑계, 거짓말 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추가한 단어에 대한 결과도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영장’의 의미에 대해 18.3%의 응답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죄에 대해 적은 진술문이나 ‘강제 수사’처럼 합법적 절차가 아닌 강제적이고 비합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수사관의)신문’은 자백유도나 수사를 위한 탐문과 같이 오해를 하고 있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 미란다 퀴즈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미란다 퀴즈를 통해 알아보았다. 원래의 미란다 퀴즈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답변하게 되어 있다. 분석을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그렇지 않다(X)”의 동일한 답변으로 코딩하였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답변도 동일하다고 보고 “그렇다(O)”로 코딩하였다. 미란다 퀴즈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미란다 퀴즈의 문항들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전반적으로 대학생과 청소년 집단 모두 미란다 퀴즈의 오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집단에 상관없이 피의자 권리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음을 보여준다.

대학생과 청소년 간의 오답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오답률이 대학생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문항 중에서 ‘당신이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 했다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나 그 진술을 취소 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 대학생과 청소년 간의 오답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N=365)=21.157, p<.001$). 청소년은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라도 그 진술을 불이익 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대학생에 비하여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일단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게 되면 이는 영구적이다’라는 문항의 경우도 다른 내용에 비해 오답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두 집단 간 오답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N=365)=40.909, p<.001$). 진술을 시작하였다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모든 내용에 대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고 예상대로 청소년들의 오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있다’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오답 비율이 83.7%이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70.3%으로 두 집단 모두 오답 비율이 매우 높았고 청소년에 비해 대학생의 오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법원이 당신에게 변호인을 제공해 준다면, 결국 당신의 가족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돈이 없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의 문항의 오답 비율

표 4.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 미란다 퀴즈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답	오답 %		χ ²
		대학생	청소년	
“진술거부권”이라는 말은 재판에서 당신의 진술 거부 자체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O	56.2	58.2	.144
만약 당신이 진술을 거부한다면, 진술 거부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것이다.	X	60.0	63.8	.566
당신이 진술거부권을 길게 사용할수록 경찰은 당신에게 더 많은 혐의를 제기할 것이다.	X	69.7	67.0	.301
당신이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 했다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나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	X	10.3	26.1	15.379***
만약 진술을 한다면, 당신이 진술한 모든 내용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것이다.	O	53.5	53.8	.003
당신이 피의자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이상, 경찰은 당신의 진술을 절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	X	56.0	53.4	.240
신문 도중에 당신의 어떤 진술은 “비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 진술은 법적으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X	54.6	54.2	.005
일단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게 되면, 이는 영구적이다.	X	12.0	41.9	40.909***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당신이 변호인을 요구하면, 경찰은 신문을 중단해야 한다.	O	30.8	55.0	21.236***
당신이 변호인과 상의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경찰은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신문을 계속 할 수 있다.	X	23.4	48.0	23.480***
당신에게 변호인이 있다 할지라도, 신문 전에는 변호인과 개인적으로 의논 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X	22.8	33.7	5.188*
법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변호인을 원합니다.”와 “나는 변호인을 원할지도 모릅니다.”는 동일한 뜻이다.	X	12.4	32.0	19.939***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다.	X	83.7	70.3	9.010**
만약 당신이 돈이 없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X	3.2	21.1	27.086***
만약 법원이 당신에게 변호인을 제공해 준다면, 결국 당신의 가족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X	20.5	37.4	12.395***
당신이 경찰에 자백하고 며칠이 지난 후라도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O	10.8	33.7	27.398***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피의자 권리는 오로지 죄가 있는 용의자들에게만 적용된다.	X	5.9	35.7	48.669***
피의자 권리의 내용은 어디든지 동일하기 때문에 고지해줄 때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	X	15.1	34.3	17.767***
다른 기관(예를 들면, 백화점 경비원)에 의해 구금(체포)되어도, 피의자 권리는 여전히 적용된다.	X	74.5	70.3	.752
목격자가 당신을 범죄자로 지목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불법이다.	X	86.9	74.4	8.898**
“무자력/궁핍한 피고인들”이란 정식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다.	X	26.8	47.3	15.999***
만약 경찰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에게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당신의 진술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X	56.0	59.9	.556
신문을 받기 전, 피의자 권리를 포기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는 피의자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O	18.5	39.5	19.281***
피의자 권리는 당신이 구금(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X	31.0	47.1	9.725**
경찰은 신문 중에 당신에게 가공의 범죄(발생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O	67.0	47.7	13.677***

*p<.05, **p<.01, ***p<.001

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인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제도가 있으며 그 서비스는 무료라는 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의 경우 두 집단 간 오답 비율에서 3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목격자가 당신을 범죄자로 지목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불법이다’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오답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신문 중에 당신에게 가공의 범죄(발생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의 경우에는 청소년보다 대학생의 오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 포기

경찰서에 연행된 유죄인 용의자 또는 무죄인 용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할 것인지 물었다면 용의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비율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조

사를 거부하겠다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각 비율은 퍼센트로 직접 표기하고 두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수식으로 제시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용의자가 유죄인 경우에 권리를 포기하고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비율은 대학생 평균이 24.69%였고 청소년은 32.90%로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t(324)=-3.217, p=.001$). 반면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없는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비율이 대학생은 75.17%였고 청소년은 67.10%로 대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고 그 차이는 유의미했다($t(323)=3.190, p=.002$). 경찰서에 연행된 무죄인 용의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변호인 없는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학생이 33.67%, 청소년이 45.94%였고 이 차이는 유의미하였다($t(346)=-3.881, p<.001$). 반면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없는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비율은 대학생 66.33%, 청소년 55.70%이었고 차이 역시 유의미했다($t(346)=3.073, p=.002$).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대학생들보다 유죄인 경우 권리를 포기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비율은 더 높

표 5. 용의자의 권리 포기 비율

	M(%) (SD)		df	t
	대학생	청소년		
경찰서에 연행된 유죄 인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할 것인지 물어본 경우 용의자의 선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비율	24.69 (21.91)	32.90 (25.34)	324	-3.217**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없는 조사는 거부하겠다는 비율	75.17 (21.85)	67.10 (25.34)	323	3.190**
경찰서에 연행된 무죄 인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할 것인지 물어본 경우 용의자의 선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비율	33.67 (28.71)	45.94 (30.27)	346	-3.881***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없는 조사는 거부하겠다는 비율	66.33 (28.71)	55.70 (35.76)	346	3.073**

*p<.05, **p<.01, ***p<.001

있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없는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비율은 더 낮았다. 또한 무죄인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대학생보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비율은 더 높았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없는 조사는 거부하겠다는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들은 본인이 경찰서에 연행된 용의자라 가정하고 경찰관이 피의자 권리를 알려주었을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의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를 본인이 유죄인 경우와 무죄인 경우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본인이 유죄인 경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변호인 없이 진술하겠다고 답한 비율보다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겠다는 비율은 청소년이 더 높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대학생이 더 높았다. 두 집단 간 답변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chi^2(1, N=364)=10.040, p=.002$). 또한 본인이 무죄인 경우는 두 집단의 의견에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무죄인 경우라도 진술거부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경우가 포기하고 진술하겠다는 답변보다 더 많았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대학생에 비해 권리를 포기하고 변호인 없이 진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고 포기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경우는 대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답변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chi^2(1, N=364)=51.284, p<.001$).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미성년자(중고등학생)와 성인(대학생)의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권리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많았다. 예상대로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사용한 단어나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된 결과 미성년자의 이해도는 성인에 비해 더 낮았다.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사용된 단어들은 ‘혐의, 진술거부권’과 같은 법적 용어를 포함하고 있고 ‘선임’과 같은 어려운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변명’이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핑계’나 ‘거짓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권리 고지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관의 신문을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 ‘자백을 얻기 위한 과정’과 같이 자백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지문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어떠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애매모호하다. 본 연구 결과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지문에 포함되는 단어나 표현들은 직관적이거나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변경해야 하고 애매한 표현들은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표 6. 자신의 권리 포기 비율

		대학생	청소년	χ^2
		N(%)	N(%)	
자신이 유죄 인 경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변호인 없이 진술하겠다.	그렇다	25(13.5)	48(26.8)	10.040**
	아니다	160(86.5)	131(73.2)	
자신이 무죄 인 경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변호인 없이 진술하겠다.	그렇다	22(11.9)	82(45.8)	51.284***
	아니다	163(88.1)	97(54.2)	

*p<.05, **p<.01, ***p<.001

둘째,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 정신 지체자 등과 같은 취약집단의 경우 피의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에 비해 낮으며 피의자의 권리를 더 쉽게 포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ooper & Zapf, 2008; Rogers, Harrison, Hazelwood, & Sewell, 2007). 앞서 설명하였지만 미국의 경우 성인용과 미성년용 권리 고지문이 별도로 존재한다. 미성년용의 경우에는 구두 및 문서로 권리를 고지하는데 미성년 피의자 본인 및 부모(또는 보호자)가 각 권리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권리에 대한 내용은 성인용에 비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제시 된다.¹⁰⁾ 안타깝게도 한국은 미성년 피의자들을 위한 권리 고지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8월 31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수상한조서-309동 성폭행 사건의 진실’ 편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세 명,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두 명과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한 명, 그리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자퇴생 한 명이 어떠한 수사 과정을 거쳐 허위 자백을 했고 결국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진술녹화실의 녹화영상은 학생들은 변호인이 없이 진술하는 과정과 범행을 인정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모든 질문에 ‘예’라도 답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10) 진술거부권의 경우에는 “당신은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저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또는 나중에, 무엇인가를 적는다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권리를 이해하십니까?(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or the right to talk to us about this matter. This means that you do not have to write or say anything; not with me or anyone else, not now or later on. You will not be punished for deciding not to talk to us. Do you understand this right?”라고 설명한 후, 미성년 피의자 본인과 부모(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도록 한다(Holtz, 1987).

미성년 범죄자들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다. 또한 12세와 19세 사이 경찰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연구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가 낮을수록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cLachlan, Roesch & Douglas, 2011).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제시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이해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최소한 미성년 피의자용 권리 고지문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며 교육수준이 일반 미성년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여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 그리고 각각의 권리를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보다 미성년의 경우 권리를 포기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반대로 성인들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외국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무죄 용의자들은 피의자 권리를 포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향이 있다(Kassin et al., 2010). 무죄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려는 경향이 있고 본인이 무죄이기 때문에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용의자나 피의자의 신문을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관의 강압적 신문이 가해지면 허위 자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피의자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 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성년 피의자용 권리 고지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있거나 지능이 낮은 경우에도 이해도가 낮을 수 있어 이들에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화 통역인을 통한 고지가 필수일 것이며, 외국인 역

시 사법통역요원의 선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안성훈, 이지은(2012)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의 수도 증가하여 형사사법절차상 통역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하였다. 범죄 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 604호) 제240조는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 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5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이 제대로 통역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오해하여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경우 피의자 권리 보장은 더욱 어려워진다. 형사사법절차상의 전문 통역인 양성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용 고지문의 경우 한글과 외국 고지문 간의 번역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만든 스마트폰 용 피의자 권리 고지 애플리케이션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변명의 기회만을 제시하고 있다. 진술을 할 경우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되지 않았다.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는 이유와 목적에 적합한 고지가 되기 위해서는 누락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한(2002)은 누락된 내용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고문 방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도와주고 신문과정의 객관성과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신문에 참석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다섯째,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만든 스마트폰 용 피의자 권리 고지 애플리케이션에는 권리를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전에 이루어진 실태 조사(신의기, 강은영, 2002)에서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수사관이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충분히 설명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62.5%, 너무 빨리 말하거나 읽어서가 19.0%,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가 12.1%,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5.9%였다. 미국의 미란다 경고문은 문서로 고지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뒤에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하단 부분에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¹¹⁾ DeClue(2007)는 구두 제시용 미란다 경고문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미란다 권리를 피의자나 용의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하고 매번 ‘이 권리가 무슨 의미인지 당신만의 단어를 사용하여 말해보십시오(Tell me in your own words what that means.)’라고 권리 이해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이해도를 증진시키지 못하지만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권리의 재고지가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고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지를 할 때에도 권리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다. 현재 실정에는 무엇보다도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문을 개선하고, 이를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고지 방법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잘 이해하였는지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1) ① 당신에게는 침묵할 권리와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② 당신이 말하는 어떤 것이든지 재판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③ 당신은 경찰에게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논의할 권리와 지금 또는 미래에 신문을 받는 동안 변호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④ 만약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된다면, 원하는 경우에는 신문을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⑤ 만약 지금 변호인 없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언제라도 변호인과 상의할 때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⑥ 제가 설명을 드린 당신의 권리들을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저의 질문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쉬운 단어 사용, 각각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키고 이해하지 못한 경우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취약 집단(미성년자)용 고지문 개발 및 절차 마련, 그리고 누락된 권리 내용 포함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얼마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되었지만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그 대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학력의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도를 측정함에 있어 사용된 단어와 내용적인 이해도만을 측정하였고 의견을 물었다. 실제 상황과 비슷한 가상의 상황들을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어떠한 결정(권리를 포기할 것인지 사용할 것인지)을 내리고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한 총체적인 상황판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간단한 수준에서의 이해도만을 측정하였다. 권리를 고지하는 방법(구두 또는 문서)이나 시기(체포 당시, 신문 전, 신문 후)에 따라 권리 고지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 권리 고지에 대한 내용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게 되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의자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실제적 진실

이 왜곡되는 일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한 (2002). 미란다 규칙의 의의와 한국적 수용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김민지 (2012).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형사정책연구*, 23(3), 53-89.

김재원 (2007). 묵비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미란다 판결의 법사회학적 분석. *성균관 법학*, 19(2), 583-597.

신윤철 (2012, 4. 30). 경기지방경찰청, “외국인 범죄 용의자 미란다원칙 고지! 이젠 스마트폰을 활용하세요.”,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u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19> 에서 검색.

신의기, 강은영 (2002).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신현중, 탁종연, 김택수, 이영미, 김동범 (2007).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차별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안성수 (2008).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법학논총*, 19, 97-132.

안성훈, 이지은 (2012).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총서*, 5, 1-315.

차준호 (2006). 국내 피의자 권리 고지 실태 및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의 피의자 고지 이해도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논문*.

통계청 (2012). 2012 청소년 통계.

Cooper, V. G., & Zapf, P. A. (2008). Psychiatric patients' comprehension of Miranda rights. *Law and Human Behavior*, 32, 390-405.

Feld, B. C. (2006). Juveniles' competence to exercise Miranda rights: An empirical study of policy and practice. *Minnesota Law Review*, 91, 26-100.

DeClue, G. (2007). Oral Miranda Warnings: A

- checklist and a model presentation, *Journal of Psychiatry & Law*, 35, 421-441.
- Holtz L. E., (1987). Miranda In a Juvenile Setting: A Child's Right to Silenc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8(3), 534-556.
- Kassin, S. M., Drizin, S. A., Grisso, T., Gudjonsson, G. H., Leo, R. A., & Redlich, A. D. (2010). Police-induced confessions: Risk factors and recommendations. *Law and Human Behavior*, 34, 3-38.
- Miranda v. Arizona*, 1966.
- McLachlan, K., Roesch, R., Douglas, K. S. (2011). Examining the role of interrogative suggestibility in Miranda rights comprehension in adolescents. *Law and Human Behavior*, 35, 165-177.
- Rogers, R. (2008).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Emerging Miranda research and professional roles for psychologist. *American Psychologist*, 63(8), 776-787.
- Rogers, R., Correa, A. A., Hazelwood, L. L., Shuman, D. W., Hoerstring, R. C., & Blackwood, H. L. (2009). Spanish translations of Miranda warnings and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Law and Human Behavior*, 33, 61-69.
- Rogers, R., Harrison, K. S., Shuman, D. W., Sewell, K. W., & Hazelwood, L. L. (2007). An analysis of Miranda warnings and waivers: Comprehension and coverage. *Law and Human Behavior*, 31, 177-192.
- Rogers, R., Harrison, K. S., Hazelwood, L. L., & Sewell, K. W. (2007). Knowing and intelligent: A study of Miranda warnings in mentally disordered defendant. *Law and Human Behavior*, 31, 401-418.
- Rogers, R., Hazelwood, L. L., Harrison, K. S., Sewell, K. W., & Shuman, D. W. (2008). The language of Miranda in American jurisdictions: A replication and further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32, 124-136.
- Rogers, R., Rogstad, J. E., Gillard, N. D., Drogin, E. Y., Blackwood H. L., & Shuman, D. W. (2010). "EVERYONE KNOWS THEIR MIRANDA RIGHTS": Implicit Assumptions and Countervailing Eviden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6(3), 300-318.
- Rost, G. C., McGregor, K. K. (2012). Miranda Rights Comprehension in Young Adults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1, 101-108.
- Ryba, N., Brodsky, S. L., & Sholsberg, A. (2007). Evaluation of capacity to waive Miranda rights: A survey of practitioners' use of the Grisso instruments. *Assessment*, 14(3), 300-309.

1 차원고접수 : 2014. 09. 14.

수정원고접수 : 2014. 11. 04.

최종게재결정 : 2014. 11. 05.

Evaluation of Miranda Comprehension: A Comparison between Adults and Adolescents in Korea

Min C. Kim

Seyoung P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National Police recently developed a Miranda Rights mobile application to assist police officers, so that they can provide Miranda warnings in appropriate languages to foreign suspects. However, some differences in trans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Korean and English warnings. Furthermore, Miranda warnings for Juveniles do not exis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Korean Miranda warning comprehension level of adolescents and adults(undergraduates). The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have lower Miranda comprehension and more likely to misunderstand their rights than adul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will be discussed. The study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as foundation for improving comprehension of Miranda warning and the inform procedure in Korea.

Key words : *Miranda rights, Miranda warnings, comprehension, adolescent suspect, Miranda Quiz*